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2차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2차(하반기) 공고 개요 >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신청기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 구축 및 고도화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5억원	7.4~7.28
		고도화1	2억원		
	(2) K-스마트 등대공장 육성사업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연간 4억원 (최대 3년)	7.4~7.28	

II. 사업별 지원계획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 수준별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지원규모 : 850개 내외(기초(동일수준 포함) 665개, 고도화1 185개)

□ 추진체계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지원 (선택가능)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미지원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 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 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28일(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년, '21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③ 코디네이터 매칭은 기초단계 기업만 지원되며, 희망기업에 한해 선택적으로 지원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① 기술성평가 → ② 현장확인 → ③ 선정심의(선정)

구분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선정절차 및 방법	-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대면(발표)방식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부 판정	-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이사항 의견 등을 상정한 안건으로 선정 심의의결
	-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 사업계획서 내용 및 가점 여부 확인	- 선정·후보·탈락 여부 통보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심의에서 탈락과제로 안건 상정

<기술성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도입기업 역량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도가 적정한지?	10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 과거 정부지원 받은 스마트공장 구축시스템 활용여부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기초·동일수준·고도화1)
유턴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선정심의 시 동점의 경우 선정 순위 : ①가점제외 점수가 높은 기업 ②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③기술성평가 항목 중 지원적정성 점수가 높은 기업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 단,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 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주관으로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 제출 필수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 공급기업, 감리기관 및 원가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단, '21년 기초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22년 고도화 과제 신청 가능(고도화 과제는 기초과제 구축 완료 후 사업시작)
 -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2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21년까지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또는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기업 포함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나19 대응 (* 가점 5점 부여)	<p>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p> <p>*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p>
원전산업 협력업체	<p>원전 부품·설비 분야 제조기업</p> <p>* 원자력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발급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단, Q, A 등급에 한함)</p>
스마트 생태공장	<p>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p>
산단대개조 산단	<p>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유턴기업	<p>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p>
조선기자재	<p>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p> <p>*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p>
광주형 일자리기업	<p>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p>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2에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와 해당 지자체(광주, 황성, 밀양, 군산, 부산)에서 인정한 기업</p> <p>*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뿌리기업	<p>「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위기 지역	<p>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p> <p>*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p> <p>*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p>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p>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p> <p>*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p>
노동시간 조기단축	<p>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p> <p>*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p>
	<p>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p> <p>*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p>
	<p>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p> <p>*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p>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청년 친화형 산단	<p>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p>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p>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p> <p>* '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역(대전 대덕구, 경북 영천시)</p>
사업재편 승인	<p>「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p> <p>*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s://www.oneshot.or.kr)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p>
로봇 도입	<p>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p>
FEMS 솔루션 도입	<p>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 시 FEMS 솔루션 도입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에너지신산업	<p>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p>
정보보호 인증	<p>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p> <p>*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p>
스마트제조 표준	<p>(붙임1)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총 6개 표준)</p> <p>*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p>
여성기업	<p>「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p> <p>*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p>
상생결제 우수기업	<p>상생결제 활용실적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p>
군수품 제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내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p>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p> <p>*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p>

(2)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
-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범사례 (Best Practice)를 구축

□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4개사

- 선정기업별 총 3년간 최대 12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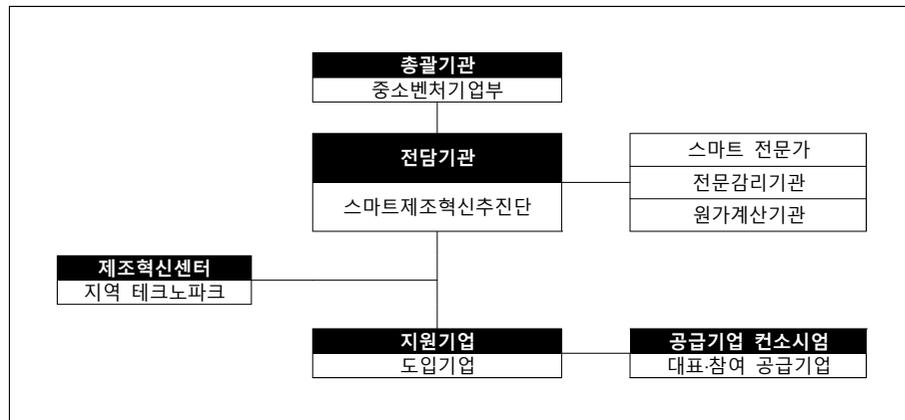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상세내용 붙임1 참조)

지원유형	세부업종(예시)
주력업종	○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기타업종	○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 뿌리업종은 주력업종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내용	
총괄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국비 교부 등 사업총괄	
전담기관	○ 사업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사업추진 점검·평가, 사업비 교부·정산 등	
제조혁신센터	○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매칭,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지원, 공급기업 컨소시엄 관리, 사업관리 등	
도입기업	○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컨설팅 기관 선정 등	
공급기업 컨소시엄	대표기업	○ 도입기업의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총괄 진행, 참여 공급기업 관리 등
	참여기업	○ 도입기업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대표 공급기업간 협력 등

□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①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②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③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a·Network·AI)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AI·5G·CPS 등)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예정기업

* Level 4 수준 :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 시 수준측정 예정으로 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신청
 - *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센터당 최대 2개 기업)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②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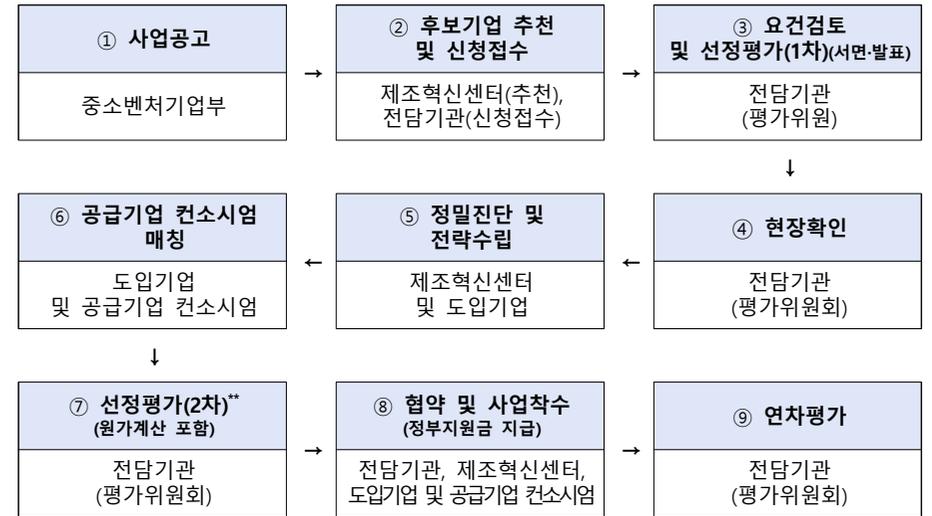
- (신청기간)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28일(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 '21) * 12월 31일 기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서 1부(미추천 TP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증빙 제출)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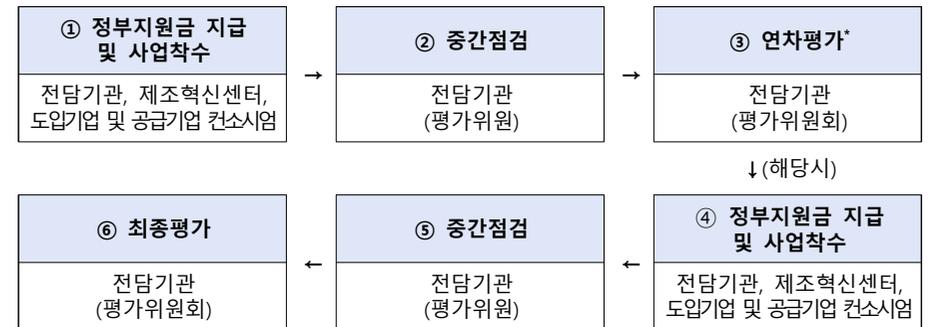
- 1차년도



* 1차 선정평가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기업 6개사 내외 선정(1.5배수)

** 2차 선정평가 : 지원기업 4개사 최종 선정(1배수)

- 2, 3차년도



* 2차년도에 사업종료 시 연차평가를 중간평가로 대체 진행하며, 3차년도 지원여부는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연차 및 최종 평가 전 감리절차를 진행하며, 최종평가 전 수준확인 진행
- 사업종료 후,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5년간 사업성과 관리 수행

□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대상기업 선정, 6개사 내외) → 현장확인 → (2차 선정평가) 실행전략·로드맵 평가(지원기업 최종 선정, 4개사)

구분	내용	비고
1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파악 * 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발표내용, 업종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도입기업 및 해당 제조혁신센터 총괄책임자 1명(총 2명) 참석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정평가에 선정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 유무(정상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 	-
2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평가 * 총 3명 (도입기업, 대표공급기업, 지역제조혁신센터 책임자 1명) 	실행전략 및 로드맵 평가

* 진행단계별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2] 참조

□ 선정방법

① 1차 선정평가

☞ 중소기업은 1·2차 선정평가에서 50% 이상 포함(단,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서면·대면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하여 기본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 70점 이상 중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6개사 내외)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 전담기관에서 선정결과를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제조혁신센터는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지원

< 1차 서면·대면평가 항목 >

평가 항목		점수				
고도화 (40)	- 사업 추진배경 및 고도화 필요성	5	4	3	2	1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5	4	3	2	1
	- 4차 산업혁명 기술(AI·5G 등) 적용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 기술적용 사례에 대한 공장 전 부분으로의 확장성	10	8	6	4	2
	- 고도화 Use-case 창출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8	6	4	2
지속 가능성 (30)	- CEO·경영진의 고도화 실천의지 및 구체성	5	4	3	2	1
	- 안전관리, 노동친화, 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제고	5	4	3	2	1
	- 공정개선(P·Q·C·D) 및 재정적 효과(ROI) 창출 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5	4	3	2	1
	-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계획의 구체성	5	4	3	2	1
파급효과 (30)	- Best Practice 창출 가능성	10	8	6	4	2
	-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	5	4	3	2	1
	- 노하우 공유, 벤치마킹·학습 기회제공 등 제조혁신 확산성	5	4	3	2	1
	-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가능성	5	4	3	2	1
	- 고용창출,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5	4	3	2	1
합계		100				

② 현장확인

- 전문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평가방식 :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 현장확인 항목 >

평가 항목		적격/부적격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사업계획서와 구축 현장의 차이	적/부
	- 연동하는 기존 설비, 장비, SW 등의 정상가동 여부	적/부
	- 신규도입 설비, 장비, SW 등의 사실여부	적/부
	- 도입·공급기업의 프로젝트 전담인력 구성의 사실여부	적/부

③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 1차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고,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4개사)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 선정

- 전담기관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하여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2차 서면-대면평가(최종 선정평가) 항목 >

평가 항목		점수				
도입기업 (50)	- 사업계획(제조혁신센터 지원계획 포함)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20	16	12	8	4
	- 고도화 실행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8	6	4	2
	- 연차별 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8	6	4	2
	-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KPI)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	10	8	6	4	2
공급기업 컨소시엄 (50)	- 대표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및 도입기업 지원전략의 타당성	10	8	6	4	2
	- 대표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10	8	6	4	2
	- 대표 참여기업의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8	6	4	2
	- 도입기업 구축 시스템(S/W) 및 시설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8	6	4	2
	- A/S,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	10	8	6	4	2
합계		100				

□ 기타사항

-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입기업은 지역 제조혁신센터(TP)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도입기업을 미추천한 TP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증빙(자율서식)을 제출)
 - * 지역 제조혁신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2개 이내의 후보기업을 추천
- 1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의 정밀진단,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기업을 추천한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지원(기업당 2천만원 이내)
 - * 제조혁신센터는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 Pool을 활용할 수 있음
 - ** 도입기업이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컨설팅 기관을 선정
 - *** 정밀진단-전략수립 비용은 2차 선정평가 후 제조혁신센터에서 컨설팅 비용 지급 예정
-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의 도입기업은 제조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권장)
 -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최대 3년(소기업 5년)
-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연차별 최대 8천만원 한도)
 -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비롯해 시스템 안정화, AS 요청·관리 등 AS관련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연 8회 이상의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 횟수 및 기간 조정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III. 문의 및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기초·고도화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K-스마트등대공장		044-300-0958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붙임 1

가점 대상 스마트제조 표준 목록

❶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❷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

❸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재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❹ (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 *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

❺ (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CAD, CAM)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에 대한 표준
- * 이종 회사의 CAD,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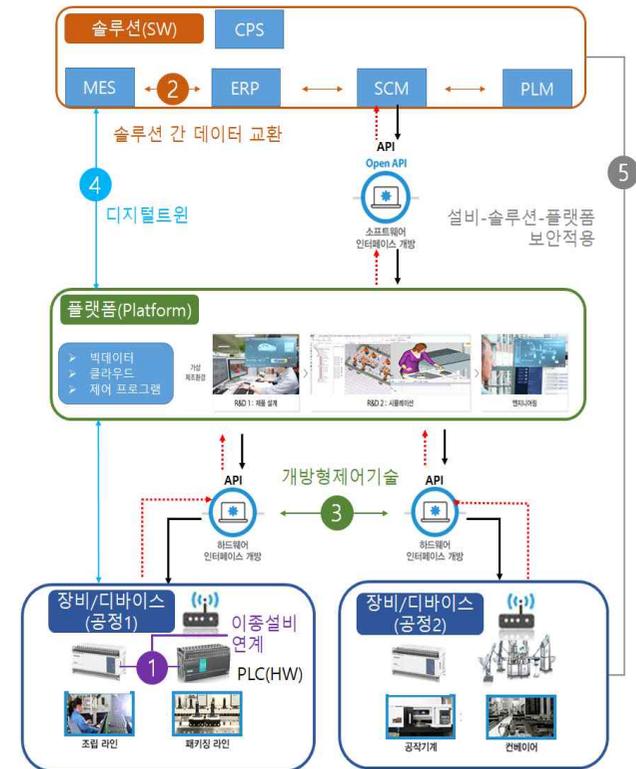
❻ (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 설비-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 * 설비의 데이터를 PLC-제어프로그램-솔루션(MES 등)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MES 등)-제어프로그램-PLC를 제어하는 표준

<그림> 표준 적용 예시

솔루션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MES, ERP, SCM, PLM, WMS, CPS 등)

플랫폼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SW, 제어 프로그램, CAD, CAM 등)



붙임 2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붙임 4

K-스마트등대공장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구분 현황

주력업종

업종구분	세부명칭	업종코드
석유정제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제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
1차 금속	-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속가공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제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전기장비	-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계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업종

업종구분	세부명칭	업종코드
식품	- 식품 제조업	C10
음료	- 음료 제조업	C11
담배	- 담배 제조업	C12
석유제품	-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3
의복 및 모피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가죽 및 신발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나무제품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6
종이제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인쇄·기록매체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약품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고무·플라스틱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비금속광물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화학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기타 운송장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가구	- 가구 제조업	C32
기타 제품	-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뿌리업종(해당 뿌리업종은 사업신청 시 주력업종으로 신청)

업종구분	업종명 및 품목명	분류번호	
주조	뿌리기술활용업종	- 주철관 제조업	24131
		- 선철주물 주조업	24311
		- 강주물 주조업	24312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1
		- 동주물 주조업	24322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주물주조기계	29230101
금형	금형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소성가공	뿌리기술활용업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1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2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3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액압 프레스	29223101
		- 기계 프레스	29223102
		- 금속 단조기	29223801
		- 금속 인발기	29223802
		- 나사 전조기	29223803
		- 금속선 가공기	29223804
- 기타 금속성형기계	29223809		
열처리	뿌리기술활용업종	- 금속 열처리업	25921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공업용로	29150101
		- 전기로	29150103
표면처리	뿌리기술활용업종	- 도금업	259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1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0499210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8909804
		- 금속 표면처리기	29299104

업종구분	업종명 및 품목명	분류번호
용접	- 철강관 제조업	2413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
	- 자동차 제조업	301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
	- 선박 건조업	3111
	- 철도장비 제조업	312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
	-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
	- 용접봉	25999201
	- 아크 용접기	28909301
	- 저항 용접기	28909302
	- 기타 전기용접기	28909309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1
	- 기타 용접기	29199109
	-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2
	- 칩마운터	29271103

* 업종명 및 품목명,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